

계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

채권자 〇〇〇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어촌계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자 계장 〈〉〈〉

전화 · 휴대폰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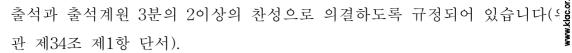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어촌계 계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1. 채권자는 198○. ○. ○.부터 현재까지 ○○시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시관내 ○○어촌계의 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2. 채권자가 가입하고 있는 채무자 어촌계는 내규로 "공적인 사항을 개인이 관공서 등에 투서 등으로 민원제기시 어촌계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채권자가 20〇〇. 〇. 〇. 〇〇시에 선착장파손에 관한 진정을 하자, 채무자 어촌계는 20〇〇. 〇. 〇〇. 임시총회에서 채권자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습니다.
- 3. 한편, 채무자 어촌계 내규의 상위 규범인 해양수산부고시 제20〇〇-〇〇호 비법인 어촌계정관(예)은 계원의 제명에는 총회개최일 10일전에 그 계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위 정관 제22조 제1항), 계원 과반수의



- 4. 그러나 채무자 어촌계는 채권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출석계원 48명중 찬성 27명, 반대 18명, 기권 3명 등으로 출석계원 3분의 2이상인 32명에 미달하 여 채권자에 대한 제명결의는 부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다른 계원 9명이 마치 출석하여 찬성한 것처럼 임시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권자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으므로 절차상 무효라 할 것입니다.
- 5. 채권자는 채무자 어촌계의 제명결의에 의하여 생업인 어로생활에 사용한 선착 장에 배를 대지 못하는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6. 한편, 채권자는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1. 소갑 제2호증

1. 소갑 제3호증

1. 소갑 제4호증

1. 소갑 제5호증

1. 소갑 제6호증

조합원증명서

임시총회의사록

◇
◇
◇
◇
◇

<

확인서

진술서

비법인어촌계정관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 송달료납부서

각 1통

1통

2000. 0. 0.

위 채권자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our l					
게츠붜이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관련법규					
제출법원						
	지방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목록 5부정도 첨부)					
	(채권자)					
│ │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4						
	(채무자)					
불복절차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및 기간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					
	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					
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						
	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					
	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ㅇㅇㅇ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0월대	보증보험사와 지급 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1. 가처분신청서사본2. 주민등록표등본3. 담보제공명령서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